



광 양 시

시보는 광양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0호 2023. 3. 8.(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86호	광양시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8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3-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7
광양시 고시 제2023-9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52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10
광양시 공고 제2023-525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
광양시 공고 제2023-537호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18
광양시 공고 제2023-538호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
광양시 공고 제2023-543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36
광양시 공고 제2023-550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알림	37
광양시 공고 제2023-558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양시 공고 제2023-560호	도로지정공고	59
광양시 공고 제2023-565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광양시 공고 제2023-567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7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광양시 광영동 1088번지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광양시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양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복합생활soc거점 '광영스포츠 콤플렉스'	인정사업	83.3억원	2021년~2023년
	사업위치	광양시 광영동 1088번지 일원	사업면적	4,516㎡
사업시행자	광양시			
사업 필요성	본 사업지역은 초기 택지개발지역으로써 기초생활인프라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에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곽 유희부지 활용을 통한 거점 기능을 도입하고, 인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필요 기능을 지원하여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함.			
사업내용 및 효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 및 생활soc 공급			
재원조달방안	국비 50억원, 지방비 33.3억원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복합생활SOC거점 ‘광역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목표	쇠퇴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공급,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과 연계한 지역중심성 강화에 기여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최종고시)	예산	변경 후 (금회 변경)	예산	변경/보완 사유
계	-	8,330	-	8,330	
변경	1. 실내체육시설 및 활동공간	72	1. 실내체육시설 및 활동공간	65.59	· 연면적 축소로 인한 면적 및 총수 재구성
	(1) 다목적실내체육관 1,408㎡	72	(1) 다목적실내체육관 701.25㎡	65.59	
	(2) 실내마루체육시설 100㎡		(2) 실내마루체육시설 165.34㎡		
	(3) 공용면적 871㎡		(3) 공용면적 626.29㎡		
	(4) 상생협력상가 60㎡		(4) 상생협력상가 73.87㎡		
	(5) 음악연습실 50㎡		(5) 음악연습실 159.25㎡		
	2. 부대시설	2.25	2. 부대시설	7.69	· 연면적 축소로 인한 면적 재구성
	(1) 야외공연무대 300㎡	0.75	(1) 야외공연무대 341.44㎡	2.57	
	(2) 가변형주차장 63면	-	(2) 가변형주차장 -	-	
	(3) 부대공사 2,029㎡	1.5	(3) 부대공사 2,307.82㎡	5.12	
3. 경사진입로	1.5	3. 경사진입로	2.22	· 연면적 축소로 인한 면적 재구성	
(1) 경사진입로 500㎡	1.5	(1) 경사진입로 295.46㎡	2.22		
유지	4. 설계 공사비 및 감리비	5.3	4. 설계 공사비 및 감리비	5.3	유지
	(1) 설계 공사비 및 감리비	5.3	(1) 설계 공사비 및 감리비	5.3	
	5. 프로그램 운영	2.5	5. 프로그램 운영	2.5	유지
	(1) 체육 및 예능 여가 문화강좌	2.5	(1) 체육 및 예능 여가 문화강좌	2.5	
(2)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2)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3) 창업지원 컨설팅	(3) 창업지원 컨설팅				
(4)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4)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재원 조달계획(변경)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83.3	50		33.3							
소계			83.3	50		33.3							
마중물 사업	■	부지매입비											
	■	조성비	75.5	45.3		30.2							
		1) 조성비	-										
		2) 건축조성비											
		① 주차장 조성 (1층)											
		소계	65.59	39.36		26.23							
		②실내 체육 시설 및 활동공간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마루체육시설										
			공용면적	65.59	39.36		26.23						
			상생협력상가										
			음악연습실										
		소계	7.69	4.61		3.08							
		③부대 시설	야외공연무대	2.57	1.54		1.03						
			부대공사	5.12	3.07		2.05						
		④경사진입로	2.22	1.33		0.89							
■	설계 및 감리비	5.3	3.2		2.1								
■	프로그램운영(지역역량강화)	2.5	1.5		1.0								

5] 주요변경사항

○ 광영동 스포츠복합플렉스 연면적 조정 2,489㎡ → 1,726㎡

6] 도시재생관련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44)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8길 22 외 3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4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70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8길 22	20230308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489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9길 77 (마동)	20230308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3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0-5	202303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022-1, 2021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매각길 58	202303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섬진강(국가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다압면 목길 11-8
	성명	김*자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74-1
	면적	252㎡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매화축제 계절음식 판매
점용기간		2023.3.10. ~ 2023.3.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은죽길 54-1
	성명	한*섭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운곡리 764-2
	면적	640㎡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토지의 점용 (경작)
점용기간		2013.7.24 ~ 2028.7.24.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39-3	2023. 3. 8.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8.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39-3	2022. 6. 15.	2023. 3. 8.	건축물대장 말소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3-52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이갑산	주소	충천면 신림길 44
소하천명		신림2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충천면 봉곡리 386번지		
	면적	63㎡	매천부지(麻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02. 19.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보지의점용		

첨합서류

1. 실시절계도서
2. 위치도(축척 6만분의 1 지형도)

2 90mm × 297mm [4 삼지 80g/㎡ (제 4호용종)]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정의 변경(안 제2조의제2호)
 -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지정기준 변경(안 제2조의제2항)

4. 예고기간: 2023. 3. 2. ~ 3. 17.

5.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일부개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7일까지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ka99@korea.kr

2)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교통과

3) 팩 스: 061-797-2591

라. 문의처: 광양시 교통과(전화: 061-797-3464)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광양시 100원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의 제2호 중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인 마을”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생 략)</p> <p>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 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 지 <u>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광양</u> <u>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u> <u>정한 마을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p> <p>2. ----- ----- - <u>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u> <u>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인 마을</u> -----.</p>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 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① (생략)</p> <p>② <u>시장은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u></p>	<p>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u></p>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량이나 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46-117 외 2필지
- 나. 사업명칭 :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다. 사업기간 : 2022. 01. ~ 2024. 12.
- 라.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현장조사 토지 및 지장물

- 가. 토지 :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46-119번지 외 1필지, 415㎡ (편입토지조서 별첨)
- 나. 물건 : 위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 등 일체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첨

3. 현장조사 연기 신청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기간 : 2023. 3. 8. ~ 2023. 3. 14.
- 나. 현장조사 : 2023. 3. 15. ~ 2023. 3. 17.
- 다. 조사장소 :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061-797-2419)
- 라. 조사원의 성명: 붙임 허가증 참조
- 마. 조사연기 및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현장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붙임 이의신청서, 조사 연기신청서)으로 열람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바. 조치 : 1)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내용 통보
2)조사연기 신청자에게는 일정 개별협의
- 사.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5. 측량 조사 시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 1)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 2)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수 없음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 4)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음

6. 장애물제거 등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 1)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애물 제거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애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기타사항

- 가. 현장조사를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061-797-2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 전라남도 내 21개 시군 조례제정 시행 중 : 우리 시만 없음

3. 주요 내용

-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안 제6조)
-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2’

5. 입법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4.(21일간)

6. 의견제출

-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식품위생과(전화 : 061-797-41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1’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57741]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보건소 3층 식품위생과
- 전자우편 : banms@korea.kr
- 팩 스 : 061-797-4158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조례 제 호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식품 위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 법인·영업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먹거리타운 또는 특화거리”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관리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 기관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사업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3.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개발·육성사업
4. 먹거리 타운 또는 특화 거리 지정·육성 사업
5.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행사 참가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
6. 위생업소 위생등급·모범업소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우수업소 지원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 방역시설·물품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 별지 1-1호 서식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7조에 따른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지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 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담당업무 팀장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 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2. 주민의 복지 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지방자치법 제10(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법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 제1항관련)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지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	--------------------------	----------------------------------

관광기본법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준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2016.1.22>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계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營業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營業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營業
 -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營業
 -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營業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營業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9. 12. 3.>

□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판**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전라남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번호	시,군	제정일자	소관부서	유/무	비고
1	목포시	2016.12.19.	보건위생과	○	
2	여수시	2020.12.31.	식품위생과	○	
3	순천시	2019.07.01.	식품위생과	○	
4	나주시	2015.16.16.	보건행정과	○	
5	담양군	2022.11.07.	관광과	○	
6	곡성군	2022.07.09.	보건사업과	○	
7	구례군	2021.08.03.	문화관광과	○	
8	고흥군	2022.12.22.	관광정책실	○	
9	보성군	2018.12.28.	문화관광과	○	
10	화순군	2020.12.15.	관광진흥과	○	
11	장흥군	2019.12.27.	보건소	○	
12	강진군	2022.10.06.	문화관광실	○	
13	해남군	2019.10.29.	관광실	○	
14	영암군	2022.10.06.	농식품유통과	○	
15	무안군	2021.04.19.	보건행정과	○	
16	함평군	2022.12.29.	보건소	○	
17	영광군	2019.04.26.	스포츠산업과	○	
18	장성군	2022.12.23.	일자리경제실	○	
19	완도군	2022.12.16.	관광과	○	
20	진도군	2018.08.20.	보건소	○	
21	신안군	2022.10.19.	관광진흥과	○	
22	광양시			X	

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소명		영업신고 번호 (단체고유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물소유형태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업장 면적 m²	
	<p>※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건 물 주 (인)</p>			
우수업소 구분		위생등급제지정업소 <input type="checkbox"/> 우수업소(모범업소)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우수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신청사유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기 부담금	기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

[별지 제1-1호서식]

(관련단체용)

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 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지원요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신청사유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기 부담금	기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소요사업비: 금 원(보조금 :금 원, 자부담:금 원)

4. 사업개요

- 업소명 및 소재지 :
- 사업기간 :
- 시설규모 :
- 사업내용 :

5.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항 목	산출내역	계 (A+B)	보조금 신청액 (A)	자부담 (B)
		계			-
					-
					-

6 세부추진일정

7.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3.

광 양 시 장

1. 처분제목: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대상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건축주	반송 사유
2008-건축과-신축허가-132 (2008.10.02.)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산34-4번지 외 4필지	7,671.45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송산업개발(주) [한효산업개발(주)]	이사감

4. 공고기간: 2023. 3. 6. ~ 2023. 3. 20.(15일간)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문의사항: 광양시청 허가과(☎061- 797-3171)
7.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알림

우리시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칭: 완전출국자 등 외국인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공고
2. 공 고 기 간: 2023. 3. 8. ~ 2023. 3. 22.(14일간)
3. 공 고 대 상: 1대 (붙임 참조)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061-797-3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완전출국자 명의 운행정지 차량

연번	차량 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 등록일	운행정지 사 유
1	21라7112	L**NG M*NH T**NG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동 8*7호 (중동, 성호2차아파트)	완전출국 (2022.12.15.)

광양시 공고 제2023-558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광양시장

1. 조례안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불합리한 조문들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 영 제35조제2항(대부료의 감면)에서 대부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안 제31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여 위임범위에 맞게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호)
- 인용된 시행령 조항(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

25호)이 삭제되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삭제 (안 제27조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별도 산출방법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30조)
- 안 제4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사유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및 타 지자체 조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
- 안 제4조제2항제2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사유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문구 내용을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안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
 -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입법 예고기간 : 2023. 3. 6. ~ 2023. 3. 27.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3273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yjch01@korea.kr
-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의2”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의 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2조의 제목“(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로 하고, 같은 조항 제1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삭제>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제10조의2 -----

 -----.

②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허가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

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

----- 사용허가 -----

-----.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p>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u></p> <p>6. <u>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u></p>	<p>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u></p> <p>6. <u>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u></p>
<p>7. (생략)</p> <p>제20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7. (현행과 같음)</p> <p>제20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 ----- -- <u>사용허가부</u>----- ----- -----.</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p> <p>1. 재산의 표시, <u>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u></p> <p>2. ~ 5.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1. ----- <u>사용허가</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u>사용수익허가</u>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u>사용허가</u>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p>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7. (생략)

⑤·⑥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

(현행과 같음)

④ -----

1. ----- 농업인-----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

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

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에 대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

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

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
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
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
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

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허가 -----

-----.

1. ~ 3.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35조에 따라 영 제29조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
용허가-----

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

---. -----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사용허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 및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

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 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 15. (생략)	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 각하는 경우 12. ~ 15. (현행과 같음)
--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3. 3. 6.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3. 3. 7. ~ 2023. 3. 21.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로위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중동 산 72-9번지	백백순	29.7m	6m	광양시 중동 273-40번지	168㎡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세법」(공포 2020. 12. 29. 시행 2021. 1. 1.)의 일부 세세목 명칭 변경과 「지방세징수법」(공포 2022. 1. 28. 시행 2022. 7. 29.)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 「지방세법」 중 주민세 세세목 용어 변경(안 제3조)
 - (기존) 재산분 → (변경) 사업소분
-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8. ~ 3.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징수과장, 전화 : 061-797-3295, FAX : 061-797-4175, E-mail : bluew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주민세 재산분예”를 “주민세 사업소분예”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 (이하 “시세” 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 ----- ----- ----- ----- <u>「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u>----- ----- -----.</p>
<p>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u>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u>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u>)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u>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u> ----- ----- ----- ----- ----- ----- <u>주민세 사업소분에</u> ----- ----- -----.</p>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에</u> 따른 전</p>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 ----- ----- ----- <u>법 제103조의3제1항</u>-----</p>

현행	개정안
<p>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p> <p>2. (생략)</p> <p>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행규칙 제52조의3</u>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 ----- -----.</p> <p>1.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 ----- <u>시행규칙 제73조의8</u>----- -----.</p>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장

1. 규 칙 명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지방세징수법」(공포 2022. 1. 28. 시행 2022. 7. 29.) 개정
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결손처분 등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별지 서식 용어 및 관련 법령 정비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8. ~ 3.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징수과장, 전화 : 061-797-3295, FAX : 061-797-4175, E-mail : bluew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1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제9-2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취소하는”을 “정리보류를 취소하는”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9호”를 “제9-1호”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서식 제9-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 제1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p> <p>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u>에 따른다.</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을 취소하는</u>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을 한</u>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 취소</u>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효완성정리</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정리보류 등</u>) 법 제106조에 따른 <u>정리보류 등</u>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1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제9-2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u>에 따른다.</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u>정리보류</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u>정리보류를 취소하는</u> ----- ----- ----- <u>정리보류 취소액</u>----- ----- -----.</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를 한</u> ----- ----- ----- ----- <u>정리보류를 취소</u>하고 ----- -----.</p>

현행	개정안
<p>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u>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u>에 따른 인 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 다.</p>	<p>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u>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u>----- ----- --.</p>

신·구 조문(별지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결정결의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안

[별지 제9-1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현행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손처분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정안

[별지 제9-1호서식(갑)]

(뒤 쪽)

정리보류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광 양 시 장 (인)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11.27.>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광양시 시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광 양 시
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11.27.>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광양시 시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광 양 시
장 귀하

